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3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6. 9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6.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(8만원)을 삭제하고 시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3조 지원 사업에 ‘월 8만원’ 규정을 삭제하고,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임을 감안하여 시 조례(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)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 변경

3. 조례안 : 붙임 참고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0. 5. 15. ~ 6. 4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사업)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
1.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단,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	1.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「대구광역시 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」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참전명예수당 지급</u>

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6·25전쟁”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